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

3. 2024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영부서 : 각 기금관리운영 과·직속기관·사업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영 계획안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4년도 말 조성액 ①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25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3개)	4,769,258	1,003,336	1,021,100	4,751,494	△17,864
재난관리기금	3,311,253	941,000	992,500	3,259,753	△51,500
옥외광고발전기금	339,966	26,000	8,600	357,366	17,400
체육진흥기금	1,118,039	36,336	20,000	1,134,375	16,336

5.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p75)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1998. 8. 18.(조례 제1481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 이상(380,033천원)인 381,000천원을 적립한 금액임.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

(단위 : 천원)

수입계획				비고
항목	'25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합계	4,252,253	2,913,995	1,338,258	
전입금	381,000	363,000	18,000	
보조금	490,000	425,000	65,000	
예치금 회수	3,311,253	2,085,995	1,225,258	
이자수입	70,000	40,000	30,000	

지출계획				비고
항목	'25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4,252,253	2,913,995	1,338,258	
비용자성 사업비*	980,000	850,000	130,000	
예치금	3,259,753	2,028,995	1,230,758	
기타지출**	10,000	35,000	△25,000	

*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교체(440,000천원). 성골저수지 정비사업(500,000천원), 고신마을 시주골 도로사면정비공사(40,000천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2,000천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납(8,000천원)

○ 재난관리기금은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되어야 하며, 기금사업의 목적 및 사용용도인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보수·보강, 선제적 재난대응 사업, 법정 적립금 확보 등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것임.

■ 옥외광고발전기금(p85)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9. 조례(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

수입계획				비고
항목	'25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합계	365,966	355,154	10,812	
예치금회수	339,966	329,154	10,812	
이자수입	3,000	3,000	-	
기타수입	23,000	23,000	-	
국도비보조금				

지출계획				비고
항목	'25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365,966	355,154	10,812	
비용자성사업*	8,600	8,600		
예치금	357,366	346,554	10,182	

*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품 구입(2,800천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1,800천원), 불법, 무연고 간판 철거(4,000천원)

* 예치금(357,366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률 및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 되어야 하며, 간판개선사업, 무연고·불법·위험 광고물 단속철거, 현수막 게시대 보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거창군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체육진흥기금(p93)**

○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따라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 4. 2. 조례(조례 제 1358호)로 제정되었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

수입계획				비고
항목	'25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합계	1,154,375	1,134,925	19,450	
예치금회수	1,118,039	1,099,391	18,643	
이자수입	36,336	35,534	802	

지출계획				비고
항목	'25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154,375	1,134,925	19,450	
비용자성사업	20,000	20,000		
예치금	1,134,375	1,114,925	19,450	

* 우수 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20,000), 체육진흥기금 예치 (1,134,375)

○ **체육진흥기금**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수 선수 육성사업 2,000만 원 지원사업 외에는 여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기금설치 운용의 실효성이 없다면 존속기한에 맞춰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해 보임.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